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수경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26-66
----------	---------

발의연월일 2026. 9. 2.

발의자 김수경·김재원·김영근·안상미
정락재 의원(5인)

1. 제안이유

최근 독도 영유권에 대한 지속적인 왜곡과 역사적 침탈 시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구민을 대상으로 한 독도교육 프로그램 개발, 탐방 지원, 이러닝 활용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 종합적인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올바른 역사 인식과 영토 주권 의식을 고취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나. 지원계획 수립(안 제4조)
- 다. 실태조사(안 제5조)
- 라. 사업추진(안 제6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 나. 입법예고: 2026. 9. 2.~2026. 9. 7.
- 다. 비용추계: 붙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독도에 대한 관심 및 영토 주권 의식을 제고하고 올바른 역사 인식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독도교육”이란 독도에 대한 올바른 역사 인식 확립과 영토 주권 의식 제고 및 인식확산, 해양 동·식물 등 해양생태계 학습과 해양자원의 가치 등에 대한 각종 교육활동을 말한다.
2. “이러닝”이란 전자적 수단, 정보통신, 전파, 방송, 인공지능,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 관련 기술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학습을 말한다.

제3조(책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추진방향
2. 재원조달 방안

3. 유관기관과의 협력 방안

4. 독도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5. 그 밖에 구청장이 독도교육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독도 교육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사업추진) ① 구청장은 구민의 독도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독도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독도교육 활성화 토론회, 학술대회 등 연구지원

3. 독도교육 교재 보급사업

4. 독도교육 전문가 양성사업

5. 독도탐방 지원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독도교육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이러닝을 활용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 구청장은 독도교육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독도교육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부처, 교육청, 다른 지방자치단체, 독도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위탁)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구청장은 독도교육에 큰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5천만 원 미만 (연평균 5천만 원 미만에 해당)

4. 작성자 : 자치안전행정국 평생학습과장 송은정

□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국가 등의 기본책무) ① 국가는 독도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생태계보호와 해양수산자원의 합리적인 관리·이용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을 지속적으로 이용함에 있어서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생태적 균형이 파괴되거나 그 가치가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자연환경과 자연경관이 파괴·훼손되거나 침해될 때에는 최대한 복원·복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확정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확정하려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확정된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기본계획의 내용)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기본구상 및 추진목표

2.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생태계와 자연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3. 독도 주변 해역의 해양수산자원의 합리적인 이용에 관한 사항
4. 독도 주변 해역의 해양수산자원의 이용을 위한 연구·조사에 관한 사항
5. 독도 안 시설 등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6. 독도와 연계한 관광 촉진에 관한 사항
7. 독도 거주민의 지원에 관한 사항
8. 독도 취항 선박의 지원에 관한 사항
9. 독도 주변 해양과학 연구를 위한 시설물의 설치에 관한 사항
10. 독도 관련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11. 독도와 관련한 교육과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
12. 독도 관련 국제협력 증진에 관한 사항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 데에 드는 경비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14.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사항

제6조(기본계획의 시행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확정 또는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그 시행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추진성과를 2년마다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추진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